## [별표1] <del>공용</del>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

## [1] 공통평가항목 (65점)

(앞쪽)

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	비고		
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비율 (20점)	지원 실적 비율 0%	20	○ " <b>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비율</b> "이란, 보조금 지원 상한액에 대한		
	지원 실적 비율 20% 미만	18	다해 여도르 포하하여 친구 5년가 지위바의 보조근 느게이		
	지원 실적 비율 40% 미만	16			
	지원 실적 비율 60% 미만	14	○ 산정식 : 최근 5년간 = <u>보조금 누계</u> ×100 보조금		
	지원 실적 비율 80% 미만	12	지원 상한액		
	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	15	○ "준공 후 경과 연수"란,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공동주택의 준공 후 경과 연수를 말함  ○ 공동주택 준공 후 경과 연수가 오래된 노후한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 ○ <참고> 2016. 1. 1.기준 준공 경과 연수표		
	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	13			
준공 후 경과 연수	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	11			
(15점)	준공 후 11년 이상 경과	9	1991. 01 .01. 이전     25년 이상       1996. 01 .01. 이전     20년 이상       2001. 01 .01. 이전     15년 이상		
	준공 후 7년 이상 경과	7	2005. 01 .01. 이전 11년 이상 2009. 01 .01. 이전 7년 이상		
자체부담금 비율 (10점)	자체부담금 비율 80%이상	10	○ " <b>자체부담금</b> "이란,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비		
	자체부담금 비율 60%이상	9	○ 사제무검음 이단, 중농무역에서 자제적으로 무심하는 사업비로서, 총 사업비에서 구청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을 뺀 금액         ○ "자체부담금 비율"이란, 총사업비에 대한 자체부담금의 백분율         ○ 총사업비에서 자체부담금 비중이 높을수록 배점이 높음         ○ 산정식 : 자체부담금 비율         =		
	자체부담금 비율 40%이상	8			
	자체부담금 비율 20%이상	7			
	자체부담금 비율 20%미만	6			
	30세대 미만	10			
	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	9	○ " <b>신청주택 세대수</b> "란, 건축물대장에 따른 동일 주택건설대지		
신청주택 세대수 (10점)	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	8			
	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	7			
	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	6			
	500세대 이상	5			
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(10점)	세대비율 100%	10	○ " <b>국민주택규모</b> "란,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m²		
	세대비율 70% 이상	9	이하인 규모를 말함  o "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"란,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에 대한 국민주택규모의 세대수 백분율을 말함  o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		
	세대비율 50% 이상	8			
	세대비율 30% 이상	7	높음 ○ 산정식 : 국민주택규모 = <mark>국민주택규모 세대수</mark> × <b>100</b> 전체 세대수		
	세대비율 30% 미만	6			

평가항목	평가기준		배점	비고
경로당 개보수시업 (5점)	노후 경로당 개	보수사업	5	<ul> <li>노후로 인해 노인 생활환경이 열악한 단지의 경로당 시설물 개보수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</li> <li>단, 북구 사회복지과 "경로당 개보수 사업"과 중복지원 불가 (☎ 사회복지과 241-7663)</li> </ul>
승강기 교체사업 (5점)	150세대 이하 <del>(</del> 승강기 교체 사	공동주택의 노후 업	5	○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금액이 적은 15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 주택에서 노후 승강기를 교체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
입주민 안전 직결사업 (5점)		구조물 붕괴에 안전에 직결되는	5	<ul> <li>용벽, 담장 등 구조물 붕괴 및「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」용역 결과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고자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</li> </ul>
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시업 (4점)	관련법 개정에 따른 필요사업		4	○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
에너지절감 실천시업 (3점)	LED전등, 태양광시설 설치사업		3	○ 공용시설에 LED전등을 교체 설치하거나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절감 실천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
주차시설 확충시업 (3점)	노후 공동주택의 주차시설 확충 사업		3	<ul> <li>1994. 12. 30.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 중, 어린이 놀이시설, 조경시설 등의 1/2 범위 범위에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</li> <li>단, 북구 교통행정과 "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"과 중복지원 불가 (23 교통행정과 241-7964)</li> </ul>
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프로젝트 사업			2	○『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프로젝트 사업』 참여 단지 가점부여 (☎ 창조경제과 241-7724)
각종 시책시업 참여 광동주택 (10점)	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		2	○『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』 참여 단지 가점 부여 (☎ 시 환경정책과 229-3132, 환경위생과 241-7763)
	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		2	○『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』시범 사업 참여 단지 가점부여 (☎ 환경미화과 241-7813)
	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	20% 초과	2	○ 전년도『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』이 있는 단지 가점부여 (☎ 환경미화과 241-7813)
		10%~20%	1.5	
		10% 이하	1	
	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참석		2	<ul> <li>○ 전년도 『공동주택 관계자 교육』 참석 단지 가점부여</li> <li>(☎ 건축주택과 241-8023)</li> </ul>

## [3] 감점(-)부여 항목 (5점)

평가항목	평가기준		배점	비고
행정조치 공동주택 (5점)	행정조치	과태료 부과, 고발	5	<ul> <li>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,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및 분쟁 등으로 구분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는 단지에 감점부여</li> <li>해당하는 항목의 최고점을 부여하며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음 (☎ 건축주택과 241-8024)</li> </ul>
		시정명령	4	
		행정지도 2회 이상	3	
		행정지도 1회	2	

## [4] 총점계산

총점 [1] 공통평기항목 소계 + [2]기점(+)부여항목 소계 + [3]감점(-)부여항목 소계